

☒ 전세 ☐ 월세	부동산 임대차계약서	
---	------------	--

1. 부동산의 표시

소재지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86-105, 286-105, 286-105			
면적	건물	539.84㎡	대지	245㎡
전세(보증금)		#임대보증금 #상업보증금		

2. 계약조건

제1조	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.	
제2조	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(보증)금을 지불하기로 함	
계약금	#임대금	원점은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
보증금	##	원점은 년 월 일 지불하고
잔금	#임대사백만#	원점은 2016년 02월 20일 지불하고

제2조	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6년 02월 20일까지 2017년 02월 19일까지
제3조	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, 임차권 양도 또는 임대차권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 위반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4조	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,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5조	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,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.
제6조	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(중도금 없음 때에는 잔금)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,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.
제7조	중도금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,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으로서 본 계약으로 본 계약이 무효, 취소, 해제되어도 중도금수는 지급한다. (중도금수: 거래가액의 0.4%)
제8조	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제9조	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 서류를 작성하여 2016년 01월 24일 공제증서 사본과 함께 중개위원에게 교부한다.

1) 임대차 계약금

2016년 01월 24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86-105

인도인	주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86-105	성명	박문민	이시현
인도인	주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86-105	성명	박문민	이시현
인도인	주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86-105	성명	박문민	이시현

문자포인트
92280000-000